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21446호, 2026.3.5. 제정, 2026.7.1.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·영산강유역환경청·낙동강홍수통제소·영산강홍수통제소의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·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,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는 한편,

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6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 단서 중 “광주광역시, 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한다.

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중 “2026년 8월 31일”을 “2028년 8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(제25조 관련)

명칭	관할구역
한강유역 환경청	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[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(북한강과 그 지류, 섬강을 포함하는 섬강 합류점 상류의 한강 본류와 그 지류를 말한다) 및 금강수계는 제외하고, 강원특별자치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(한탄강과 그 지류를 말한다), 충청북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(섬강을 포함하지 않는 섬강 합류점 하류의 한강 본류와 그 지류를 말한다) 및 충청남도 내 안성천수계를 포함한다. 다만, 하천관리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한강 중 섬강 합류점 하류 구간을 관할한다]
낙동강유역 환경청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(하동군 및 남해군은 제외한다) [하천 관련 업무(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는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· 경상북도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전북특별자치도 ·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남도 하동군 내 낙동강수계를 포함한다. 다만, 하천관리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낙동강 중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구간을 관할한다]
금강유역 환경청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(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), 충청남도 (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내 한강수계 및 충청남도 내 안성천수계는 제외하며, 경기도 · 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내 금강수계를 포함한다. 다만, 하천관리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금강 전 구간을 관할한다)
영산강유역 환경청	전남광주통합특별시, 경상남도 하동군 · 남해군, 제주도 (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경상남도 하동군 내 낙동강수계는 제외하고, 전북특별자치도 내 섬진강수계를 포함한다. 다만, 하천관리1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영산강 전 구간을 관할하고 하천관리2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섬진강 전 구간을 관할한다)

[별표 5]

홍수통제소의 관할구역(제43조 관련)

명칭	관할 구역
한강홍수통제소	서울특별시 · 인천광역시 · 경기도(금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) · 강원특별자치도(낙동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) 일원과 충청북도 중 한강 및 안성천수계지역, 충청남도 중 안성천수계지역, 경상북도 중 한강수계지역
낙동강홍수통제소	부산광역시 · 대구광역시 · 울산광역시 · 경상북도(한강 및 금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) · 경상남도(섬진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) 일원과 강원특별자치도 ·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낙동강수계지역
금강홍수통제소	대전광역시 · 세종특별자치시 · 충청북도(한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) · 충청남도(안성천수계지역은 제외한다) 일원과 경기도 · 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중 금강수계지역
영산강홍수통제소	전북특별자치도(낙동강 및 금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)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(낙동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) 일원과 경상남도 중 섬진강수계지역

[별표 6]

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(제46조제3항 관련)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섬진강홍수통제 출장소	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	전북특별자치도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경상 남도 중 섬진강수계 및 섬진강남해수계 지역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5조(관할구역) 「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1조에 따른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경기도(수원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평택시, 안산시, 과천시, 오산시, 군포시, 의왕시, 시흥시, 김포시, 화성시 제외)를 관할구역으로 하고,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(남해군은 제외한다)를 관할구역으로 하며,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경상남도 남해군 및 제주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.	제25조(관할구역)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전남광주통합특별시, ----- -----.
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	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

